

永小作에 관한 史的 研究

朱 奉 圭*

<目 次>

- I. 小作制度의 發源
- II. 導掌權의 永小作權으로의 形成·發展
- III. 本格的 永小作의 形成·發展
- IV. 綜 合

I. 小作制度의 發源

族制組織에 의한 共有制가 施行되고 있었던 原始經濟社會下에서의 우리나라 土地制度는 新羅가 高句麗 및 百濟를 統合하여 이룩한 新羅統一以後부터 公田制度로 變化하여 公有制로 變貌케 되었다. 新羅統一以後 및 高麗朝初期의 公有制度下에서 職田, 賜田 등등의 名目으로 公私人에 대하여 土地가 賜與케 되었고 이에 賜與者와 耕作者間에 土地保有管理面에서 地主와 小作人의 對應된 觀念으로서의 階層存立이 可能케 되었으며 公有制度의 崩壞推移에 따라서 나타난 土地占有化 및 土地兼併化의 顯在化 속에서 小作의 觀念은 漸次 그 輪廓을 뚜렷히 하게 되었다. 그후 李朝中葉 즉 18世紀後부터는 公有制度에 立脚한 職田 制度가 漸次的으로 崩壞하여 그의 崩壞度와 反比例하여 土地私有制度가 胚胎케 되었다. 그리하여 私法上의 小作關係가 陰性的으로 發生케 되고 그에 따라서 漸次로 小作慣習의 發達을 보게 되는 것이나 高麗朝의 餘弊를 繼承한 李朝의 土地制度는 그의 末葉에 이르러 極度の 紊亂에 達하였기 때문에 法規上의 公田과 私田의 區別에 對한 明確性을 잃게 되고 여기에 各樣 各色的의 形態와 內容을 갖는 小作의 發達을 보게 이르렀다.

朝鮮에 있어서 永小作 내지 그와 類似한 小作制度의 發達은 위와 같은 錯雜한 土地制度의 內面的인 發展過程에서 비롯된 것이나 그의 發源의 原因은 地域的인 特殊事情에 따라서 各各 다른 것이 되어 있다. 이에 永小作權의 小作慣行을 살펴 보기로 한다.

* 本研究所 研究員, 서울大學校 農業經濟學科 教授.

II. 導掌權의 永小作權으로의 形成發展

朝鮮에 있어서 永小作은 土地管理權의 永小作權化過程에서 비롯된 것인데 그의 代表的인 內容은 司宮庄土의 成立과 그의 變遷過程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에서 司宮庄土란 王室로부터 獨立된 宮家에 給與하는 田土 즉 宮房用으로서 廣義의 宮庄土는 宮內合計機關인 內需司田을 包含한 것이며, 이것은 李朝初期 職田制度의 廢止에 隨伴하여 盛行된 가운데 設定된 것이다.

司宮庄土의 經濟的인 內容을 보진대 그것은 司宮의 經濟支辨의 源泉이었고 收租權을 附帶하는 土地이었다. 그리하여 司宮庄土의 設定은 開墾土地, 屯田 및 其他公田 或은 買收되어진 民田에서 이룩되고 있었다.

本來의 司宮庄土의 成立에 隨伴하여 派生的으로 나타나고 있었던 것으로 假裝의 庄土가 있었다. 즉 投託地⁽¹⁾ 및 混奪入地⁽²⁾가 그의 代表的인 것이 되어 있었다.

위와 같은 宮庄土가 李朝 五百餘年間に 걸쳐서 많은 地積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이것이 朝鮮에 있어서 田制를 極度로 紊亂케 하는 主要原因으로 作用하고 있었다. 實로 田制紊亂이 司宮庄土의 亂設에 있다고 할 程度로 甚刻한 內容이 되고 있었으며, 司宮庄土가 極히 僅少한 時代에는 庄土의 管理人을 別途로 둘 必要없이 單純히 收穫期에 管理人을 派遣하여 收稅토록 하는 것에 그쳤으나, 顯宗以後부터 漸次 司宮庄土가 增大하고 遠距離 所在의 庄土에 對하여서는 特히 管理人을 두어 管理할 必要에 이르게 되었으며 이것이 곧 導掌의 起源이 되었다.

導는 案內를 掌은 任을 意味하는 用語로써 導掌이란 宮庄土의 案內役 兼 管理人인 司宮의 一職員이었다. 이 職名이 時代의 變遷과 더불어 하나의 職權으로 發展되고 役職에 依해서 發生되는 導掌의 經濟的 權能自體를 導掌이라는 用語로 觀念케 이르렀다.

그런데 導掌은 當初부터 無給의 管理人이었던 것이나 그의 代償으로서 司宮庄土의 收益權을 賦與하고 있었다. 단 司宮에 對하여서는 每年 一定의 粗穀을 納付하는 義務를 負擔토록 되어 있어서 收納義務가 強要되어 있었으나 그 때에 低質의 粗穀을 司宮에 代納하고 庄土의 小作農民으로부터 割増小作料를 徵收하고 그의 差額粗穀을 自己所得化하고 있었다.

(1) 投託地란 주로 脫稅 또는 不正官吏 勢力家の 侵害防止의 目的으로 自己土地를 安全한 宮房에 投託하여 表面上 宮房庄土와 같이 假裝되어지고 있는 土地를 말한다.

(2) 混奪入地는 司宮職에 있는 사람이 庄土隣接의 民田을 原庄土에 大量 不正編入시켜 놓은 土地를 말한다.

所謂 中間搾取的 管理人的 經濟關係에서 보면 導掌의 地位는 中番主(또는 中賭主)⁽³⁾의 地位에 相當한 것이 되어 있었다.

司宮에 있어서는 導掌에 對하여 거의 干涉을 하지 않고 있었다. 그리하여 甚한 過失이 없는 限에 있어서 導掌의 地位는 安全하게 되고 容易하게 解職되는 일은 없었다. 그리하여 導掌職은 自然히 世襲으로 하고 마침내 職權에 隨伴한 役職에 對하여 經濟的 價値를 發生케 한 事實은 導掌의 權利가 賣買⁽⁴⁾되어진 事實에 依해서 뚜렷하다.

요컨대 導掌은 關係司宮에 대하여 一定稅額을 納付하고 自己가 管理하는 庄土에 對한 收益을 請負받는 가운데 大部分이 世襲的 職權으로 되고 더우기 經濟的 實權을 掌握함에 이르러 그의 職權의 賣買가 公認케 되었다. 後世에 있어서 導掌은 마치 庄土上에 設定되어진 一種의 物權으로서 看做케 되었고 그것은 永小作權과 類似한 것이 되고 있었다.

다만 永小作權으로서 類似한 導掌權은 그의 支配地인 庄土의 廢止에 隨伴하여 處分되기에 이르렀다. 왜 나하면 導掌의 支配地인 庄土가 增加됨에 이르러 土地制度의 紛糾가 深化되었으며 이에 따라서 帝室의 收入이 顯著하게 減少되기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光武 11년에 이르러 宮內府令에 依하여 庄土의 整理 및 導掌의 廢止를 斷行하기에 이르렀다. 즉 各宮事務整理局을 設置하여 庄土를 管理케 하였으며 導掌에 대하여서는 相當의 賜禮令을 給與하여 그것을 廢止하고 庄土는 帝王室所有로 歸屬시키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朝鮮에 있어서 中間搾取的인 永小作權類似的 權利인 導掌權은 庄土의 廢止와 더불어 消滅케 되었던 것이다.

Ⅲ. 本格的 永小作의 形成 發展

1. 賭地權의 起源과 發展

賭地는 堵地라고도 불리어지고 있었는데 이들은 堤坊에 의해서 圍繞되어진 耕地를 指目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賭地는 大河沿岸, 沙洲, 島嶼地域에 集團의으로 發生되고 있었다.

(3) 日帝調査資料는 中賭地의 發生起源에 對하여 다음과 같이 記述하고 있다. 此種의 小作關係는 元官房이 그 所屬土地를 開墾하거나 水害豫防을 위한 提防을 築造하는 者에 對하여 報酬로서 權利를 認定한 데서 起因한 것이며, 後에 土地에 對해서도 官房所屬의 土地는 一般民有地에 比하여 借地料가 低廉하므로 借地人이 스스로 耕作하지 않고 이를 他人에게 轉貸하여 中間利益을 得하는 者가 있기에 이르렀다. 나아가 民有地에 있어서도 地主가 遠隔地에 居住하고 또한 借地料가 低廉한 土地에 있어서는 借地人이 이를 他人에게 轉貸하여 借地料의 差額을 獲得하는 者가 있기에 이르렀으나, 地主는 별로 이를 禁止하지 않고 放任한 結果 因襲이 오래되어 드디어 中賭地라는 特種의 借地慣行이 發生되고, 中番主라고 稱하여 地主와 小作人 間에 介在하는 借地人에 對하여 特種의 權利를 認定하기에 이르렀다.

(4) 朝鮮總督府, 『朝鮮ノ小作慣行』(上卷), 1932, p. 717.

그의 代表的 地域은 鴨綠江과 大同江沿岸 및 沙洲島嶼地域으로 알려져 있다.⁽⁵⁾

(1) 鴨綠江流域에 있어서는 ① 威化島를 中心으로 하는 것, ② 光城面 및 楊西面地域을 中心으로 하는 것 등등으로 區別하여 賭地慣行의 起源 및 發展을 살펴볼 수 있게 된다. 威化島의 경우에 있어서는 本來 이 地域이 國防上의 嚴令地로서 土地가 肥沃하여 일찍부터 移住墾耕하는 者가 많았으나, 世祖 6年(1461年)에 이르러 移住民이 野人의 捕虜가 된 일이 있어 朝廷에서 이 地域에의 移住墾耕을 禁止하였다. 純祖 10年(1810年)에 朝廷이 許民開墾할 때 그 開墾作業過程에서부터 賭地權이 發生하였다고 알려져 있으며 威化島地域이 計劃적으로 開墾되어졌음은 李朝 純祖때에 義州府尹 趙興鎭의 許墾時代라고 看做되어 있다.⁽⁶⁾

어떻든 賭地權이 어떻게 하여 發生되었는가에 대하여서는 朝鮮의 慣習調查報告書⁽⁷⁾ 및 朝鮮의 小作에 關한 慣習調查書⁽⁸⁾에 各各 다음과 같은 內容이 要約되어 있다.

첫째, 小作競爭이 激甚하였기 때문에 地主에 相當한 代價를 支拂하고 永代耕作權利를 買受함에서 起因한 것임.

둘째, 官廳이 起墾獎勵策으로써 開墾希望者에게 開墾對象土地를 拂下하고 開墾權을 引受한 者는 그 土地를 第三者에게 開墾시켜 그의 報償으로 永代小作을 約定하는 事實에 起因한 것임.

세째, 官廳으로부터 拂下를 許可받은 地主는 그 拂下土地를 移住民의 勞力으로 開墾케 하고 其後 地主는 一日耕⁽⁹⁾에 대하여 五兩을 徵收하여 그것을 賭地로 한 것에서 起因함.

네째, 開墾土地의 拂下에 있어서 官廳의 有償拂下⁽¹⁰⁾에서 起因하거나 無償拂下⁽¹¹⁾에서 起因한 것임.

한편 鴨綠江沿岸地域의 義州郡 光城面 및 楊西面地域의 경우는 威化島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鴨綠江의 逆流水 또는 洪水氾濫에 의한 沖積層地域의 河川荒無地에서 다음과 같은 原因

(5) 같은책, p. 709.

(6) 같은책, p. 712.

(7) 朝鮮總督府, 『朝鮮ノ慣習調查報告書』, 1912, p. 133.

(8) 朝鮮總督府中樞院, 『小作ニ關スル慣習調查書』, 1930, p. 44.

(9) 一日耕이란 當時의 課稅標準의 地積單位로서 2,000坪 內外를 1筆地로 하는 單位이었으며 一日間에 手耕할 수 있는 面積規模를 指稱하고 있었음.

(10) 有償拂下의 경우이란 小作人의 勞資報償으로서 賭地權을 認定하는 경우와 地主의 投資補填 其他를 위하여 小作人으로부터 金錢을 徵收하고 賭地權을 認定하는 過程에서 賭地權이 發生하는 것으로서, ① 小作人의 勞力 또는 投資에 의한 開墾의 경우 ② 地主의 投資와 小作人의 勞力에 의한 開墾의 경우 ③ 地主의 投資 또는 勞力에 의한 開墾의 경우 등이다.

(11) 無償拂下란 역시 小作人의 勞資報償으로서 賭地權을 認定하는 경우와 地主의 投資補填 其他를 위하여 小作人으로부터 金錢을 徵收하고 賭地權을 認定하는 過程에서 賭地權이 發生하는 것으로서, ① 小作人의 勞力 또는 投資에 의한 경우 ② 地主投資 및 小作人의 勞力提供의 경우 ③ 地主가 勞力 및 資本을 提供하는 경우 등이다.

에 의하여 賭地權이 發生되었다고 알려져 있다.⁽¹²⁾

첫째, 地主가 自己의 勞力과 費用으로 防水堤를 築造하고 小作人에게 開墾케 한 데서 起因한 것.

둘째, 地主가 防水堤를 築造한데 대하여 小作人이 無償勞役을 바치고 小作人이 스스로 開墾한 데서 起因한 것.

세째, 地主가 小作希望者로부터 金錢을 徵收하여 防水堤를 築造하고 小作人이 스스로 開墾한 데서 起因된 것.

네째 地主가 自己의 費用으로써 築堤하고 小作人이 스스로 開墾을 完成한 後에 地主가 小作人으로부터 金錢을 徵收한 데서 起因한 것.

다섯째, 地主가 自己 自身の 勞力과 費用으로써 築堤開墾한 土地의 耕作權을 永代賣却한 데서 起因한 것.

여섯째 地主의 防水堤의 築造에 當하여 이것의 工事監督에 從事하여 그 報酬로서 賭地權을 獲得한 것.

(2) 大同江沿岸地域에 있어서는 大同江下流地域 및 昆陽江河岸地域 및 島嶼地域에서 發展된 것이었으나 이들 賭地慣行地域의 地勢地貌는 거의 鴨綠江流域에서의 그것과 類似한 것이었고 圍繞防水垆内に 있는 耕地, 主로 畚地에서의 賭地慣行의 形成發展을 보게 되었던 것이다.

日帝의 資料에 依하면 大同江沿岸地域에서의 大同郡 一圓에서의 賭地權의 起源에 對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즉 “小作人이 그의 費用으로써 他人이 所有하는 泥生地 또는 陳荒地를 起墾하고 또한 水害豫防을 위하여 築垆에 助力한 것에 起因하여 發生하였다.”⁽¹³⁾ 그 밖에 中和郡 一圓의 賭地權 發生起源에 對하여 “當初 借地人이 地主와의 契約에 의하여 그의 費用으로써 水害를 豫防하기 위한 垆을 築하고 또한 泥生地 및 荒無地 등을 起墾한 데 起因하여 發生하였다.”⁽¹⁴⁾ 라고 要約하고 있다.

또한 地方의 現地調査에서의 住民들의 口傳을 綜合한 內容에서의 賭地權의 形成發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첫째, 地主가 築堤하고 小作人이 小作地의 分配를 받아 스스로 開墾함에서 起因한 것.

둘째, 地主가 計劃하고 小作人이 共同 또는 地主와의 共同으로 築堤해서 小作地의 分配를 받아 小作人 自身이 開墾한 데서 起因한 것.

(12) 朝鮮總督府, 『朝鮮ノ小作慣行』(上卷), 1932, pp. 723~724.

(13) 朝鮮總督府中樞院, 『小作ニ關スル慣習調査書』, 1930, p. 63.

(14) 같은 책, p. 101.

세째, 地主가 築堤한 土地를 小作人이 開墾한 뒤에 다시 地主가 對價를 徵收하여 永代小作을 約定한 것.

네째, 地主가 耕作希望者로부터 代價를 徵收하여 永代小作을 約定한 것.

다섯째, 土地를 比較的 低廉하게 賣却하여 永代小作權을 保留시킴에서 起因한 것이다.

여섯째, 地主의 防水堤의 築堤에 當하여 이의 工事監督에 從事해서 그 報酬로서 賭地權을 獲得한 것.

이상이 賭地權의 形成發展의 內容으로서 指摘되고 있다.⁽¹⁵⁾

賭地權의 形成發展에 關한 內容整理는 위와 같은 몇가지 側面에서 可能하게 되는 것이나 賭地權은 그 自體의 形成發展과 더불어 그의 成長속에서 마침내 賭地權에 關한 賣買慣習이 생겨나게 되었다. 여기에서 賭地權의 賣買란 地主가 一般의으로 土地所有權으로부터 賭地權을 分離賣買하는 것이 아니고 賭地權者의 賭地權賣買의 慣習을 指目하는 것이 되어 있었는데 當時의 文記에 나타난 賭地權의 賣買價格을 表示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¹⁶⁾

① 鴨綠江沿岸 威化島에 있어서 賭地權(田)

1878年 35兩(1日耕當) 反當換算 約 2兩

1906年 300兩(1日耕當) 反當換算 約 45兩

1908年 600兩(1日耕當) 反當換算 約 90兩

② 大同江沿岸에 있어서 賭地權의 賣買價格(畓)

1851年 2.5兩(1斗當=260坪) 反當換算 2.9兩

1895年 50.0兩(1斗當=260坪) 反當換算 57.5兩

1903年 146.0圓(1斗當=260坪) 反當換算 168.0圓

1919年 120.0圓(1斗當=260坪) 反當換算 138.0圓

③ 大同郡 南串面 芝浦里·3個里에서의 賭地權賣買價格(1929年 11月 現在)(畓 1反步當)

芝浦里 最高 195圓 普通 180圓 最低 165圓

小耳島里 最高 210圓 普通 180圓 最低 150圓

大耳島里 最高 210圓 普通 186圓 最低 150圓

耳內里 最高 195圓 普通 150圓 最低 135圓

그 밖에 賭地權賣買價格에 對하여 大同江 및 鴨綠江沿岸地域의 畓에 있어서 어떤 地方에서는 普通土地時價의 3, 4割이, 賭地權價格으로써 6, 7割이 地主의 不完全所有權의 價格이

(15) 朝鮮總督府, 『朝鮮ノ小作慣行』(上卷), 1932, p. 732.

(16) 같은책, pp. 723~724.

되어 있었고, 威化島附近의 田에 있어서는 賭地權이 3分の 1, 地主의 不完全所有權의 3分の 2의 價格으로써 去來되고 있음을 普通으로 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王子製紙株式會社 및 營林署는 威化島內에 廣大한 貯木場을 買收할 때도 完全土地價格을 100으로 하여 當時의 時價에 基準하여 60.7%弱을 地主에게 그리고 33.3%強을 小作人에게 支拂하는 事例가 있었다.⁽¹⁷⁾

小作農의 賭地權의 賣買價格은 賭地權이 一旦 所有權의 一部로서 成長發展하고 있었다 함에 우리의 關心을 集約케 하고 있거니와, 小作農의 賭地權은 밑으로부터 成長하여 土地所有權에 參與하면서 地主의 所有權을 不完全한 것으로 만들고 土地所有權을 多元化시켜, 하나의 土地에 對하여 地主가 所有權의 2/3에 接近하는 比率의 權利를 行使하고 小作人이 1/3에 該當하는 權利를 行使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어떻든 小作農의 賭地權의 成長度가 小作料率의 引下와 賭地權賣買價格의 地價와의 比率로써 測定되었던 것이며 兩者間에 相關關係가 있었다는 點에 注目할만한 것이 있다 하겠다.

勿論 當時의 朝鮮農村社會에 있어서 地主·小作人關係는 오늘과 같은 階層의인 葛藤이나 自覺이 없는 狀況에 있어서 小作人은 社會經濟上 優越한 地主에 對하여 隸屬의이었기 때문에 地主小作人 間의 紛爭과 같은 事態는 없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1910年の 韓日合併以後 土地制度가 確立되고 所謂 近代的 土地私有形態를 보게 됨에 따라서 地主·小作人 共히 法律的 및 社會的으로 刺戟되고 權利義務의 思想에 自覺됨에 따라서 從前에 表面化되지 않았던 地主·小作人 間의 紛爭이 마침내 빚어지게 되었다. 즉 1904年(光武 9年)에 鴨綠江 및 大同江沿岸地域에 있어서 土地所有權의 歸屬關係와 賭地權關係間에 紛爭이 端緒가 되어 漸次 賭地權을 둘러싼 紛爭이 激化되고 그것은 實利的 地主의 出現에 依하여 더욱 高潮에 達하게 되었다. 더우기 1915年 및 1916年에 이르러 우선 地主가 賭地權의 存在을 否定하는 主張이 擡頭케 되었고 小作人이 賭地權을 確認請求하는 事態마저 續出케 되었다. 結局 經濟的으로 優位에 있는 地主들은 小作人의 無知貧窮을 適切하게 逆利用하여 極히 低廉한 價格으로 賭地權을 買收하거나 또는 訴訟 및 其他의 強制的인 方法으로써 賭地權을 拋棄케 함으로써 賭地權 自體는 加速的으로 消滅될 수 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賭地慣習은 時間의 흐름속에서 점차 消滅되어 가서 그의 面貌를 찾아볼 수 없는 狀態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있어서 小作人側은 傍觀狀態에 있지 않고 그들의 賭地權 擁護를 위하여 1917年에 賭地組合인 小作人團體를 組織하여 그의 團體의 勢力에 依하여 既得權의 保護計劃을 樹立하고 地主에 對抗하기에 이르렀다. 그의 主된 事例는 大同江沿岸

(17) 같은 책, p. 728.

地域의 南串面, 大耳島里, 小耳島里, 芝浦里 등 里別賭地組合과 同時에 三區聯合賭地組合 등에서 나타나게 되었고 그들의 賭地組合設立의 趣旨書에 賭地의 由來에 관한 內容이 明示되고 있었다. (18)

2. 併耕權의 起源과 發展

併耕權이란 地主·小作人 間의 經濟上의 便宜에 依하여 發生되어진 一種의 永小作權을 말한다. 여기에서 經濟上의 便宜란 土地所有權者가 經濟上 主로 金錢上의 必要로부터 比較的 低廉한 價格으로 自己自身の 所有地를 賣却하며 永代耕作의 權利를 保存시키는 경우 그의 權利를 所謂 併耕權이라 指目하고 있었다. (19)

併耕權의 起源과 發展을 보면 併耕慣習이 普遍的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慶尙南道 固城郡 永吾面과 晋州郡 金谷面 一圓의 畝作地域의 畝을 中心으로 永代耕作權의 併耕權의 行使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그 밖에 固城郡의 介川面, 九萬面, 馬岩面, 上里面, 下一面 및 下二面地域에서도 併耕小作이 點在하고 있었으며 李朝末頃에 이 地方에서의 併耕小作人과 慣行面積은 千數百名과 5, 6百町步에 達하는 것이었다. (20)

勿論 併耕의 起源에 對하여서는 朝鮮總督府 小作慣行調査書에 依한 住民의 傳言을 根據로 하여 그의 起源을 推察할 수 밖에 없다. 永吾面에서는 地主가 耕作權을 小作人에게 永代小作으로서 賣却함에 起因된 것이라고도 하나 地域에 따라서 信賴할 만한 몇가지 傳言을 要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① 傳言事例(I)

㉔ 土地는 良好하나 면적이 狹少하며 ㉕ 人口稠密하고 ㉖ 따라서 小作希望者가 많고 小作權의 爭奪이 行해지고 있고 ㉗ 小作人의 更迭이 頻繁하고 ㉘ 小作人은 自衛手段으로서 地主의 土地購入當時에 土地買入 代金의 一部를 負擔하며 그의 代價으로서 永代耕作權을 留保케 함에서 起因한 것임.

② 傳言事例(II)

(18) 宇宙廣汎한 中에 人民産業이 數千萬種이나 從其居處하야 各資生活하나니 村里에난 土地耕作에 全在한지라 故로 我江南은 數百年前부터 原畝主와 小作人間에 築洞作畝의 理由로 永賭地權을 設定契約하고 現今까지 傳繼生活하던 바 到今 原畝主 등이 自恃富權하고 賭地權을 挾雜奪取코자 한 즉 豈不痛恨이리오 萬一 敗한 境遇에난 我江南數千戶가 下歸丘堅이던 至於流見失할 것은 不 言可想이라 古代에도 守望相助하여 患難相救함은 鄉閭之美俗이니 然則團體에서 圓大한 者는 決 無한지라 細流가 合하여 河海요 塵埃가 積하야 泰山은 天然한 理致이니 我江南이 意氣團結하야 堅忍相保하면 彼等富權을 豈可不敵하며 數百年賣買하던 永賭地權을 一朝見失이리오 故로 吾人 協同의 標準으로 組合을 作成하고 若干金을 鳩聚立本하고 本記條約을 熱心遵行하면 生活維持에 一大棟樑의 리라. 1917年 12月 12日.

(19) 朝鮮總督府, 『朝鮮ノ小作慣行』(上卷), 1932, p. 779.

(20) 같은 책, p. 30.

㉒ 地主의 經濟上의 便宜에 依하여 併耕權을 所有權으로부터 分離시켜 賣却한 데서 起因한 것임.

㉓ 土地買收의 경우 小作人이 그의 代金의 一部를 出資하여 永代耕作權이 獲保된 것에서 起因한 것임.

㉔ 自作地를 低廉하게 賣却하여 併耕權을 留保시킨 것에서 起因한 것임.

㉕ 永年小作을 施行하고 있는 동안에 小作人이 耕作權을 他人에게 賣却하고 이것을 併耕權이라 呼稱한 데서 起因한 것임.

㉖ 官吏의 徵租苛斂誅求를 冒免키 위하여 自己所有地를 權門勢家에게 投託하고 自身은 併耕權만을 留保케 함에서 起因한 것임.⁽²¹⁾

併耕權의 起源, 形成發展에 따라서 併耕小作에 있어서는 文字 그대로 權利를 保存하여 永久히 耕作할 수 있고 諸般負擔을 輕減케 되었으며 동시에 所有者인 地主의 干涉없이 自由로 賣買 讓渡 抵當 및 相續할 수 있는 權利로 變形되고 있었다.⁽²²⁾ 그리하여 併耕小作人은 併耕主라 呼稱⁽²³⁾되고 있어서 設令 地主가 變更되는 경우일지라도 이를 新地主에 對抗시킬 수 있었다. 또한 併耕主가 그 權利를 任意로 他人에게 賣買 讓渡하는 경우에 그 權利의 繼承者는 當然히 地主에게 對抗할 수 있었다. 그 밖에 小作關係의 解除에 있어서도 併耕主인 小作人은 이것을 언제라도 解除할 수 있는 反面에 地主는 任意로 이것을 解除할 수 없었고 地主가 만일 그 解除를 원하는 경우에는 小作人의 同意를 求하여 먼저 相當한 代價를 支拂하고 그 併耕權을 買收하지 않으면 안되는 狀態에 있었다.

이와 같은 併耕權의 慣習은 그의 經濟關係에도 많은 變化를 낳게 되었다. 즉 當時의 農業經營上의 採算에서부터 所有權과 併耕權과의 賣買投資의 觀點에 變化를 낳게 되었던 것이다. 小作農의 農業經營關係의 側面에서 顯著한 變化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이다. 즉 生産手段인 土地를 賣入하여 自作經營을 行하는 것보다도 低廉한 併耕作(小作權)을 買入하여 小作經營을 함이 더욱 有利한 狀況에 놓이게 되어 自作農의 경우조차도 從來 手中에 있던 所有地를 等閑히 하고 同額資本으로써 倍以上의 面積에 相當하는 併耕權을 買入하여 過剩狀態의 自家勞動力을 消化할 目的으로 耕作面積의 擴大를 圖謀케 되었다. 즉 同額의 資本으로써 一家의 經營面積을 擴大하여 有利한 農業을 施行할 可能性이 있으므로 自作地를 賣却하여 併耕權을 保有하거나 或은 많은 併耕權을 買入하는 事態가 빚어지고 있었으며 이렇

(21) 花島得二, 『小作權』, 1941, pp. 139~140.

(22) 耕權은 轉貸를 通하지 않고 耕作者의 特殊한 權利로 成長하고 있었으며 주로 賣買와 相續이 盛行하고 있었다.

(23) 自作地를 親耕이라고 부르고 自作農을 親耕主라고 불렀으며, 이에 대하여 小作人의 併耕權이 發生한 小作을 併耕, 그 小作人을 併耕主라고 呼稱함에서 비롯되었다.

게 하여 併耕權의 賣買行爲와 慣行은 一層 擴大一路에 있게 되었다.⁽²⁴⁾

併耕權의 賣買行爲와 慣行에 따라서 賣買價格의 形成이 實質化되었거니와 그것은 土地條件의 與否 및 經濟事情 등에 의하여 그의 賣買價格에 差異가 있기는 하였지만 大體의으로 併耕權附帶의 土地時價의 半額을 最高로 하고 其後에 있어서는 土地時價의 1/5 內外가 一般化되고 있었다.⁽²⁵⁾ 그리고 併耕權의 賣買는 반드시 文記를 作成하여 이루어졌으며 그 賣買價格은 李朝末期에는 그 最高價格이 地價의 50%까지 達하여 있었으나 日帝初期에는 그것이 地價의 20%程度이었다.⁽²⁶⁾

3. 禾利權의 起源과 發展

一般的으로 禾穀이라 할 때 그것은 稻와 同義語로 活用되고 있었으며 禾利란 畓에 있어서 稻(粳)을 賣買하는 것을 뜻하게 된다. 따라서 禾利慣行은 土地 즉 畓에 있어서 物權의 永耕權의 賣買를 意味하게 된 것이다.⁽²⁷⁾ 이러한 求耕權의 禾利慣行의 地域的인 分布는 土地가 肥沃하고 耕耘이 便利하며 동시에 人口가 比較的 稠密한 地域으로서 禾利가 가장 盛行된 地域은 곧 全羅北道 參禮 및 井邑地方으로 알려져 있고 그의 發生原因에 關한 住民들의 傳言을 綜合分類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²⁸⁾

① 傳言事例(Ⅰ)

거의 百餘年前에 이 地方에 大凶作이 있었다. 當時의 地稅는 小作人의 負擔이었으며 官에서 그에 對한 減免을 許容치 않고 있었기 때문에 地租 및 小作料를 滯納케 되는 者가 많았고 逃亡離散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따라서 地主는 그의 對策으로서 滯納하는 小作料 혹은 租稅를 代納시켜 그의 代策으로서 小作權을 賦與케 함에서 發端된 것이었다.

② 傳言事例(Ⅱ)

未曾有의 大洪水에 臨하여 堤防이 破壞되고 小作地가 荒廢케 이르렀다. 그의 結果 小作料를 滯納하고 逃亡離散하는 小作人이 적지 많이 있게 되었다. 거기에서 地主 또는 管理人은 堤防을 修築하여 새로운 小作人으로부터 未納小作料를 前納케 하고 혹은 堤防修築 및 耕地復舊에 勞役를 提供케 하여 그로부터 禾利慣行이 發端케 된 것이었다.

③ 傳言事例(Ⅲ)

驛屯土課稅는 一般的으로 小作料에 對比하여 低廉한 條件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에 對

(24) 朝鮮總督府, 『朝鮮ノ小作慣行』(上卷), 1932, pp. 723~724.

(25) 花島得二, 『小作權』, 1941, p. 141.

(26) 朝鮮總督府, 『朝鮮ノ小作慣行』(下卷), 參考編, 「從來ノ朝鮮ノ小作慣行調査資料」, 1932, p. 440.

(27) 花島併二, 『小作權』, 1941, pp. 143~144.

(28) 朝鮮總督府, 『朝鮮ノ小作慣行』(下卷), 參考編, 「從來ノ朝鮮ノ小作慣行調査資料」, pp. 434~435.

한 耕作者는 賦役 및 其他從事에 對한 必要가 없었다. 따라서 驛屯土에 對한 耕作者가 적지 않았고 管理者로부터 耕作의 權利를 買得함에서 起因, 發端된 것이었다.

④ 傳言事例(Ⅳ)

約 200年前頃の 全州邑의 近郊 4.5里의 地域은 거의 未墾地이었다. 土地가 肥沃한 이 地方에 開墾可能性을 展望豫測한 耕作希望者가 적지 않게 되었다. 즉 小作人은 自己의 勞資로써 開墾을 하고 그의 代價로써 永耕의 權利를 獲得하여 地主의 默認 또는 承諾에 依하여 禾利慣行이 發生케 되었다.

⑤ 傳言事例(Ⅴ)

地主가 所有權만을 留保하고 小作權을 永代賣買케 함에서 起因된 것이었다.

위와 같은 禾利權의 起源을 살펴볼 때 그것은 곧 小作地의 需給關係와 小作人의 特殊支出(投資)에 따라서 形成發展된 것임을 알 수 있게 된다. 그리하여 그의 發生原因 乃至 權利의 經濟關係에 있어서 賭地權 및 併耕權의 경우와 同一한 것이라는 結論을 얻을 수 있다. 다만 자기 그의 發展過程에 있어서 時期와 場所의 相異性 그리고 發生起源의 事情에 있어서 相異性을 지니고 있을 뿐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禾利權은 小作人이 自己의 小作地에 대하여 地主의 土地所有權을 對抗시킬 수 있는 一定의 強大한 權利를 가지고 地主의 承諾없이 任意로 그 權利를 賣買할 수 있는 田畝이었던 것으로서 이러한 特殊한 小作慣行을 禾利라고 부르고 있었으며 이러한 小作慣行이 行하여지는 土地를 禾利付畝이라고 稱하였고 그의 權利의 賣買를 禾利賣買라고 稱하고 있었다. 禾利付畝에 있어서는 小作人은 그 禾利의 權利를 地主의 承諾을 거치지 않고 自由롭게 賣買・讓渡・低當・相續할 수 있었으며 또한 他小作人에게 轉貸할 수 있었다. 특히 禾利의 賣買와 相續은 매우 盛行하였으며 禾利의 權利를 買受한 者는 當然히 이것을 地主에게 對抗시킬 수 있었으며 또한 地主가 變更되는 경우에도 小作人은 秋毫의 영향도 받지않고 그 權利를 新地主에게 對抗시킬 수 있었다. 그리고 地主가 小作人을 變更하고자 하거나 禾利의 權利를 消滅시키고자 할 때에는 먼저 小作人의 同意를 求하여 그 權利를 買收하지 않으면 아니되도록 되어 있었다.

한편 禾利權의 賣買 및 時價에 있어서도 不動產賣買의 경우와 똑같이 文記에 依해서 賣買되어지는 것을 慣例로 하고 있었다. 다만 禾利의 時價는 원래 土地 自體가 千差萬別함에 따라서 여러가지가 있었으나 最低의 경우 1反步에 對하여 一圓以下の 것이 있었는가 하면 最高의 경우는 1反步當 40圓以上の 것도 있었다.⁽²⁹⁾

(29) 朝鮮總督府殖産局, 『小作農民に關する調査』, 1928, pp. 137~138.

이렇듯 賭地權 併耕權 및 禾利權이 다같이 永小作權으로 成長發展되어 賣買·低當·贈與 및 相續에 對한 特殊權利를 賦與받고 있었던 것이나 이것들은 다같이 다음과 같은 社會經濟的 與件下에서 形成發展되었다는 事實을 看過하기 어렵다 하겠다. 즉 永小作權은 다같이 李朝後期の 小作制度에 있어서 經濟外的 強制가 顯著히 解體되어 가고 經濟的 關係가 強力하게 浸透하기 시작한 社會經濟變化를 背景으로 하여 發生하였다는 事實과 더불어 當時의 貨幣의 全國的 流通 즉 貨幣經濟의 成長과 關聯되어 나타난 것이다. 貨幣의 流通은 封建的身分制의 解體를 刺戟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地主와 小作人의 經濟關係를 貨幣로써 測定케 하여 合理的 計算을 可能케 하고 地主와 小作人의 合理的인 契約關係의 成立과 小作人의 耕作地에 對한 權利의 強化를 可能케 하는 條件을 形成케 하였다. 그밖에 當初에는 開墾, 築堤 또는 買收를 통하여 小作人이 一定의 勞動이나 費用 또는 貨幣를 支拂함으로써 發生된 것이었으나 그 後에는 小作人이 어떠한 勞動이나 費用도 支拂하지 않고서도 永小作權으로서의 賭地權, 併耕權 및 禾利權을 獲保할 수 있게 된 社會經濟的 變動 속에서의 歷史的인 產物이었다는 事實도 指摘될 수 있다고 하겠다.

Ⅳ. 綜 合

첫째, 永小作權은 導掌權을 發端으로 하여 形成發展된 것이었으나 導掌權은 그의 支配地인 司宮庄土의 廢止에 隨伴하여 過渡的인 永小作權으로 그칠 수 밖에 없었으며 本格的인 永小作權의 形成發展은 賭地權, 併耕權 및 禾利權에서 實質化되고 있었다.

둘째, 永小作權으로서의 賭地權, 併耕權 및 禾利權은 다같이 小作地의 需給關係와 小作人의 特殊支出 즉 勞資支出에 따라서 그의 反對給付 및 報償으로서 形成發展된 것이었으며, 그들은 그의 發展過程에 있어서 時期와 場所를 달리하고 있었을 뿐 그 性格과 內容은 同質的인 것이 되고 있었다.

셋째, 永小作權으로서의 賭地權, 併耕權 및 禾利權은 小作農의 自作小作地에 對하여 保有되고 있었던 特殊權利로서 그것은 地主의 承諾을 要하지 않고 自由롭게 賣買, 讓渡, 低當, 相續할 수 있었고 地主가 變更되더라도 그 權利를 新地主에게 對抗시킬 수 있었으며 동시에 權利의 程度에 따라 小作料를 切減시킬 수 있었던 小作特有의 權利에 對한 性格이 되고 있었다.